

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안내

당사 운용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의 변경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□ 대상투자신탁

1.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(채권 - 재간접형)
2.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 - 재간접형)

□ 변경 대상서류

-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

□ 변경일: 2010년 7월 26일

□ 변경 내용

- 1) 신탁업자보수율 인하
- 2)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3) 집합투자업자 및 펀드 비용 관련 자료 갱신

1.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(채권 - 재간접형)

* 집합투자규약 변경

항목	기존	변경 내용
제39조(보수) 제3항	- 신탁업자보수율 : 연 <u>0.05%</u>	- 신탁업자보수율 : 연 <u>0.04%</u>
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	<p>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.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.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	<p>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.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

*** 투자설명서 변경**

항목	기존	변경 내용
<p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 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</p> <p>다. 기타 투자위험</p>	<p>해지위험: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<u>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</u>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.</p>	<p>해지위험: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<u>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u>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<u>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u>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.</p>
<p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 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	<p>- 신탁업자보수율 : 연 <u>0.05%</u></p>	<p>- 신탁업자보수율 : 연 <u>0.04%</u></p> <p>- 펀드 비용 관련 자료 갱신</p>
<p>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p> <p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/p>	<p>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</p> <p>라. 운용 자산 규모</p>	<p>자료 업데이트</p>
<p>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p> <p>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</p>	<p>▶ 임의해지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</p> <p>-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/ <u>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</u></p>	<p>▶ 임의해지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</p> <p>-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/ <u>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u> / <u>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u></p>

2.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 - 재간접형)

* 집합투자계약 변경

항목	기존	변경 내용
제39조(보수) 제3항	- 신탁업자보수율 : 연 <u>0.05%</u>	- 신탁업자보수율 : 연 <u>0.04%</u>
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	<p>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.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.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</p>	<p>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.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. <u>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u> 4. <u>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u></p>

* 투자설명서 변경

항목	기존	변경 내용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	<p>해지위험: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<u>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</u>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.</p>	<p>해지위험: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<u>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u>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.</p>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- 신탁업자보수율 : 연 <u>0.05%</u>	- 신탁업자보수율 : 연 <u>0.04%</u> - 펀드 비용 관련 자료 갱신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<p>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</p> <p>라. 운용 자산 규모</p>	자료 업데이트

<p>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p> <p>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</p>	<p>▶ 임의해지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</p> <p>-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/ <u>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</u></p>	<p>▶ 임의해지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</p> <p>-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/ <u>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/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u></p>
---	--	--